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37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30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7일 김정환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년 3월 27일
3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9년 4월 22일 상정·의결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김정환 의원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의사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내용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 및 안 별표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,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

- 의안번호 537번 김정환의원의 안은 「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2항에서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에서 서울시 의사상자에 대하여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가. 김정환의원의 안 -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지원(안 제7조제2항)

현행	개정안
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(생략) ② 시장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	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공헌자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, 「국민기초생활 -- -----

<p>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, 서울 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·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---	--

- 현행 조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(제7조제2항)에서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음.
- 그러나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한 의사상자 범위(제4조제2호)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사시설 사용 대상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.
- 서울시는 2011년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하여 의사상자¹⁾ 및 의사자 유족, 의상자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설치·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,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, 추가적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와 공연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.

1) - “의사자(義死者)”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(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.
 - “의상자(義傷者)”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시행령”이라 한다)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.

- 사회적 여론과 집행부 방침을 고려할 때, 의사상자에 대한 장사 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에 장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의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나,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해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의상자를 포함한 의사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.

※ 의사상자 지원 추진 실적(2019년 1월 기준)

□ 의사상자예우법

제5조(인정신청 등)
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·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>

□ 인정 소요기간

- 법률상기간 :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접수되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인정 또는 불인정이 결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이고 30일 연장이 가능.
- 보건복지부 사회자원서비스 현황 : 현재 시도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, 18년도에는 7회 개최되었음.
- 서울시 : 18년도에 18.10.2.신청하여 12.5 보류, 19.2.8일 인정결정(97일 소요)이 된 바 있고, 18.5.3, 5.14, 5.23 3건이 신청하여 복지부에서 7.26 결정(83일,72일,63일소요), '18.3.23.신청 4.5결정(13일소요) 된 바 있음.

※ 최근18.12.31.발생되어 언론의 이슈를 받고 있는 강북삼성병원 입

세원 의사 건은 자치구에서 서류구비로 시간이 소요되어 4.1일자로 서울시에서 복지부로 신청한 상태임.

3 종합 의견

- 김정환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(제7조제2항)에서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(제7조제1항제1호) 또는 같은 항 의료급여 수급자(제7조제1항제3호)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음.
- 그러나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서 규정한 의사상자 범위(제4조제2호)에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 상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관련 지원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.
- 의사상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, 개정안과 같이 의사상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다만, 개정안에 장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의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, 의상자 가운데서도 의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의상자를 포함한 의사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.

참 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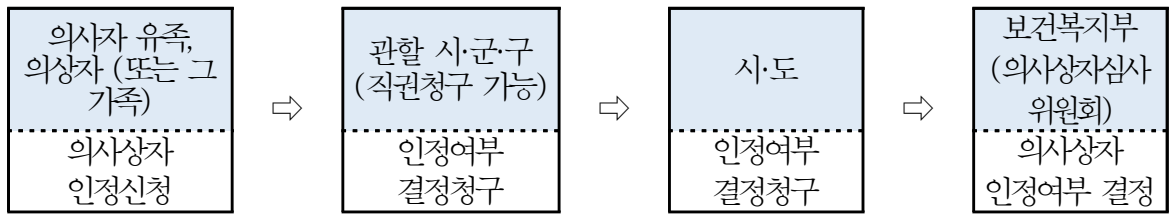
의사상자 지원 내용

□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(조례 제5조, 시행규칙 제2조·제3조)

- 지급대상 :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

※ 의사상자 인정절차(보건복지부)

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(가족 포함) →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/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→ 서울시 → 보건복지부(의사상자심사위원회)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



- 지급방법 :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

※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: 현금수령증

- 지급순위

· 의사자 : 유족(순위 : 1. 배우자, 2. 자녀, 3. 부모, 4. 조부모, 5. 형제자매)

· 의상자 : 본인(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)

※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

▶ 공동신청 :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

▶ 단독신청 : 특별위로금 포기서(붙임 2)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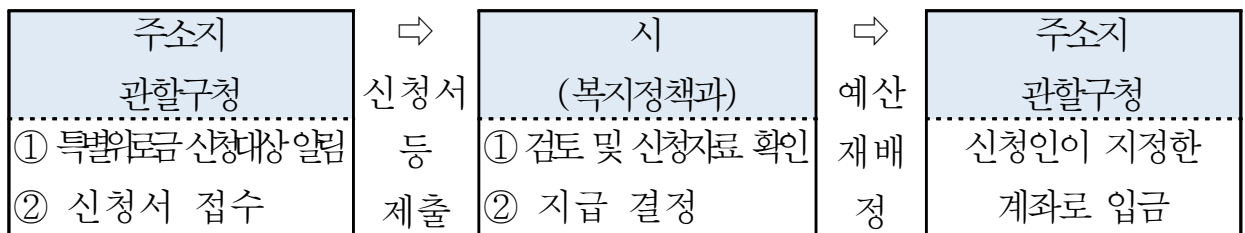
- 지급금액 : 의사자(3천만원), 의상자(1급 1,500만원 ~ 9급 50만원)

<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>

(단위: 천원)

부상등급	1급	2급	3급	4급	5급	6급	7급	8급	9급
지급액	15,000	12,500	10,000	7,500	5,000	3,000	1,000	750	500

- 지급절차



- 소요예산 : 150,000천원

: 산출근거 : 30,000천원(의사자) × 4명 = 120,000천원

15,000천원(의상자 1급) × 2명 = 30,000천원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참석위원 찬성 11명, 반대 0명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37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3월 29일

발 의 자 : 김정환, 최정순, 최기찬, 문장길,
김상진, 송정빈, 김제리, 김생환,
이광성, 김광수, 송명화, 김경영,
유 용, 김화숙, 장상기, 이영실,
문병훈, 권영희 의원 (18명)

1. 제안 이유
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(의사상자 지원사업)에서는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,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「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」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 골자

의사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내용을 신설함(안 제7조제2항 및 관련 별표).

3. 참고 사항

- 가. 관련 법령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「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나. 예산 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공헌자 및 「국민기초생활」을 “공헌자 및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, 「국민기초생활”로 한다.

별표 화장시설의 。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의 배우자란 다음에 。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。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	무료	무료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

별표 봉안당의 사용료의 。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란 다음에 。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	100,000	240,000
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	50,000	120,000

별표 봉안당의 관리비 (매5년마다)의 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란 다음에 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 - 신규사용(최초 15년 사용) - 재 사 용(5년마다 기간연장시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	25,000	45,000
---	--------	--------

별표 자연장지의 ◦ 『국가보훈기본법』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그 배우자 (1위당)란 다음에 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◦ 『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의사자 (1위당)	250,000	750,000
---	---------	------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시장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및 「<u>국민기초생활 보장법</u>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, 서울 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·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③ ~ ⑦ (생 략)</p>	<p>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<u>공헌자 및 「의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에 따른 의사자, 「<u>국민기초생활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(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)제4항 관련 별표에 따라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가 감면되어 이에 따른 세입감소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 ≒ 10,70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10,700천원으로 연평균 2,140천원임
- 추계의 전제
 - 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 - 서울시 의사자의 숫자는 연간 평균 의사자인 2명(2010년~2018년, 9년간 19명 인정)으로 전제하여 추계

※ 서울시 의사자 인정 현황(2018년 12월말 기준, 보건복지부 행복e음 통계)

(단위 : 명)

년도	2010년	2011년	2012년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	계
의사자	1	3	1	3	3	4	2	2	0	19

- 자연장지의 사용료 부과기준인 40년을 기준으로 봉안당 사용료와 관리비를 산출 하였으며 봉안시설 안치되는 첫해에 40년치 비용이 다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(실제로는 40년에 걸쳐 비용 발생)
- 1인당 최대 1,070천원(봉안시설 안치시)~최소 370천원(자연장 안장시)의 감면액이 발생하나 봉안시설 안치시를 가정하여 비용 산출

※ 조례개정안에 따른 감면내역(서울시민, 봉안당 40년 안치 기준)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	총 감면액 (40년 안치 기준)
화장시설 사용료	<일반시민 기준 1구당> 120천원(대인)	의사자 무료	120천원
봉안당 사용료	<일반시민 1위당> 최초 15년 200천원 +5년마다 연장시 100천원	<의사자 1위당> 최초 15년 100천원 +5년마다 연장시 50천원	350천원
봉안당 관리비	<일반시민 1위당> 매 5년마다 100천원	<의사자 1위당> 매 5년마다 25천원	600천원

○ 상세 비용추계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연도						합계
	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	2024년		
세입	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(조례안 제7조 별표)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10,700	
	소계(a)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2,140	△10,700	
세출		-	-	-	-	-	-	
	소계(b)	-	-	-	-	-	-	
□ 총 비용(b-a)		2,140	2,140	2,140	2,140	2,140	10,700	

○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(=10,700천원)

-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$$= \sum_{i=1}^5 (\text{연간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 금액})_i$$

※ i = 비용추계 연차(2020년~2024년)

- 연간 의사자의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

$$\begin{aligned}
 &= \text{연간 의사자 1인당 시립장사시설 이용료 및 관리비 감면액} \times \text{의사자 수} \\
 &= (\text{화장시설 사용료 120천원 감면} + \text{봉안당 사용료 350천원 감면} \\
 &\quad + \text{봉안당 관리비 600천원 감면}) \times 2\text{명} \\
 &= 1,070\text{천원 감면} \times 2\text{명} \\
 &= 2,140\text{천원}
 \end{aligned}$$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당관 남승우
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
주무관 채소영

☎ 02-2180-7944

e-mail : liz1998@seoul.go.kr